

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최정훈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2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일

3. 제안이유

- 도내 인근 지역 간, 관광자원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의 ‘지역연계관광’을 규정하고,
- 지역별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매력있는 관광코스 관련상품 개발과 공동마케팅 및 홍보 등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충북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‘지역연계관광’을 정의함(안 제2조제8호)
-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관광진흥사업을 정함(안 제5조)

- 관광업무의 위탁에 대한 조항 정비(안 제7조)
 - 대상업무를 추진사업(제5조)과 관광안내소(제6조)로 지정
- 보조금에 대한 조항 정비(안 제8조)
- 위탁 대상 업무 조항을 삭제함(종전 제9조 삭제)
-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성공 보상을 삭제함(종전 제11조 삭제)
- 관광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, 법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입법 체계에 맞춰 조항을 정비하고, '지역연계관광'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, 관광진흥사업 추진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- 안 제2조는 내국인 관광객, 외국인 관광객, 관광사업자 등의 정의는 유지하면서, '지역연계관광'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도내 시·군 관광자원과 관광상품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.
- 안 제3조는 도지사가 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,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책무를 규정한 것임.
-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관광진흥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, 안 제6조에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7조는 관광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관광진흥사업과 관광안내소로 명확히 규정함.

- 안 제8조는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, 그 과정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- 안 제10조는 충청북도 관광진흥에 기여한 개인, 법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'지역연계관광'의 용어 정의, 도지사의 책무, 관광안내소, 보조금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,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음.